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52
----------	-----

2019년 6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이정인 의원 외 11명
- 나. 발 의 일 : 2019년 5월 21일
- 다. 회 부 일 : 2019년 5월 24일
- 라. 상 정 일 : 제28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6월 14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황인식)

### 가. 제안이유

-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19.7.1시행)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조례 내에 있는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 방지(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입법예고 (2019. 5. 29. ~ 6. 5.) 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장애인복지법」)의 개정(2016.12.19.)과 장애등급제 개편(2019.7.1. 시행)에 맞추어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u>장애등급</u> ,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범위) ① ----- ----- ----- ----- <u>장애정도</u> ----- ----- -----.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는 상위법령(「지방공무원법」 제77조)<sup>1)</sup>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동 조례 제1조).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써 장애등급과 관련하여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적용받음.

1)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5. 5.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5. 5. 1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의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장애등급을 나누고,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급여자격 등을 제한한 현행 장애인등급제에 대하여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장애특성 및 환경적 요인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를 개편하여 중증과 경증의 2단계로 구분하여 개정(2016.12.19.) 한 바 있음.

※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복지법」이 그 동안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제2조)하면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왔음.

-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장애의 종류별로 제1급부터 제6급까지 장애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비롯한 많은 법률(「고용정책기본법」, 「병역법」,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이러한 장애등급제와 관련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하여 2013년 장애인단체, 학계전문가, 관계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장애판정체계 기획단이 구성되어 장애등급제 개편방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를 목표로 2018년부터 우선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의 2단계로 장애등급제를 개편하여 2019년 7월 1일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음.

장애 등급 판정기준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	○	○	○	
		상지 파열					
		하지 파열	○	○	○	○	○
		상지 기능					
		하지 기능	○	○	○	○	○
		허추 장애		○	○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	○		
	시각장애	○	○	○	○	○	
	청각 장애	중력					
		달팽			○	○	○
	언어 장애						
	심장 장애			○			
심장 장애	○	○					
호흡기 장애	○	○					
간 장애	○	○					
인면 장애							
장부·요부 장애			○				
과잉 장애							
정신적 장애	지체 장애	○					
	지배성장애	○	○				
	정신 장애	○					

-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도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를 변경하여 상위법령과의 상충성을 제거하여 법적정합성을 꾀하고, 장애인복지 시스템의 통합적 운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서울시에는 장애인 공무원이 1,939명(5.16%)이 재직하고 있는 바, 행정국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개편에 따른 미비점은 없는지에 대한 실태파악 및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 5.16% (2019.5.31.기준, 단위:명 / 별도정원 포함)

구 분	정 원	장애인 공무원 수 (A+C)	실 장애인 공무원 수 (B+C)	장애정도			장애인 고용률 [(A+C)/ 정원×100]	
				중증		경증(C)		
				장애인 공무원 수 (A=B×2)	실 장애인 공무원 수(B)			
계	45,281	2,338	1,939	798	399	1,540	5.16%	
서울시	시	10,928	359	309	100	50	259	3.29%
	자치구	34,353	1,979	1,630	698	349	1,281	5.76%

- 또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에서는 교육훈련, 이동권, 근무환경 등에 대한 편의증진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국에서는 장애인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및 환경개선과 차별적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장애등급 용어의 변경에 따른 용어의 일괄정비에 대한 검토와 실국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도 요망된다고 하겠음(참고자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11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2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1일

발 의 자 : 이정인, 정진술, 김인호,  
이은주, 이승미, 김태호,  
홍성룡, 노승재, 김소영,  
강동길, 김소양, 박순규,  
의원 (12명)

### 1. 제안이유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19.7.1시행)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조례 내에 있는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 방지(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u>장애등급</u>,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8조(지원범위) ① ----- ----- ----- ----- <u>장애정도</u>----- ----- -----.</p> <p>② (현행과 같음)</p>